

Deloitte.



기업지배구조보고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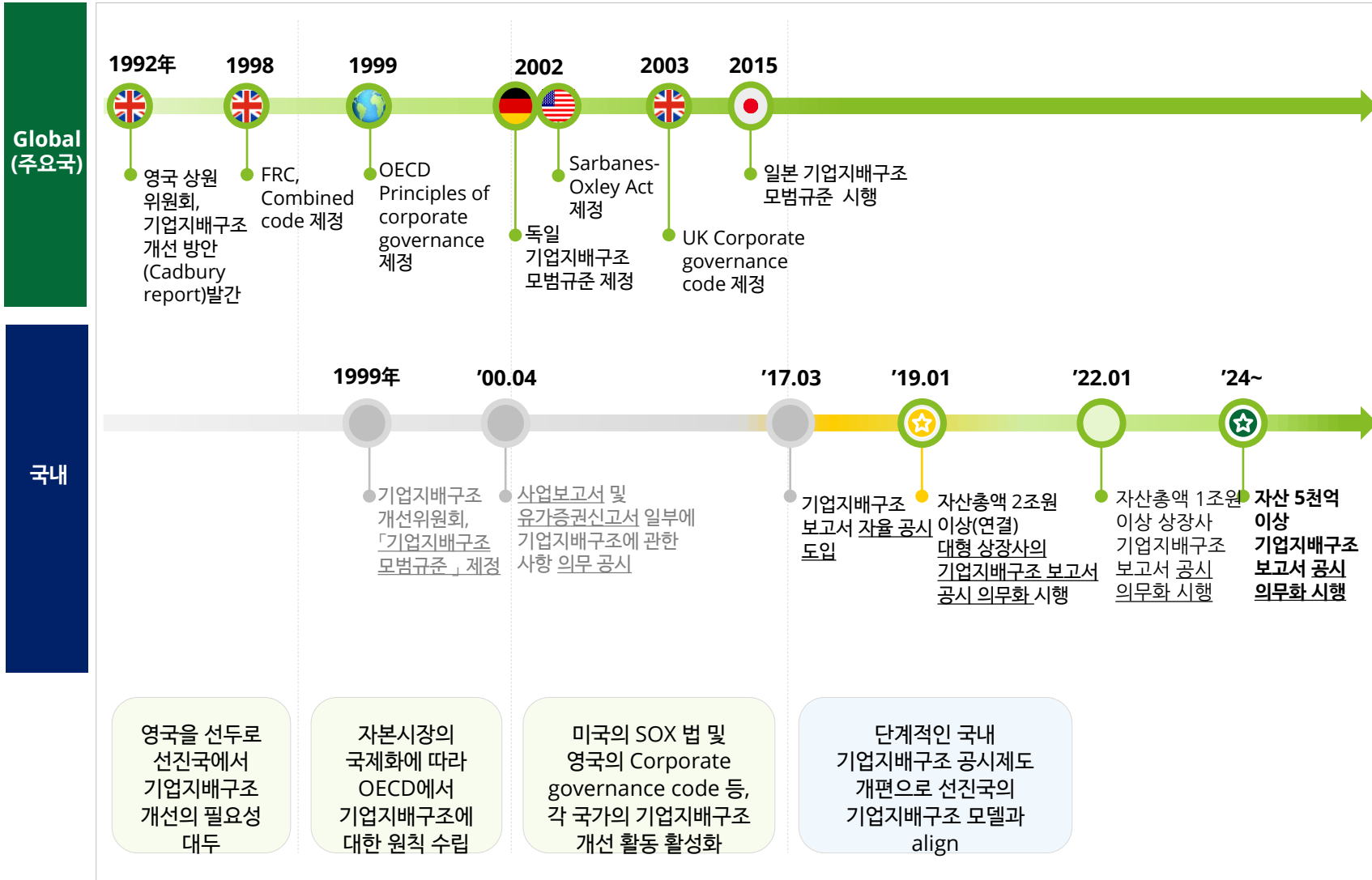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 개요

19년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 촉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OECD 지배구조 원칙 기반 하에 구체화된 핵심원칙, 세부원칙과 핵심 지표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책임투자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규준 법제화 timeline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19년 가이드라인 제정

- 공시정보 충실도 제고를 위한 핵심원칙별 필수 기재사항 제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現ESG모범규준) 및 OECD 지배구조 원칙 기반 구체화
- 핵심원칙(10개), 세부원칙(28개), 핵심지표(15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위한 준수 장려)

20, 22년 가이드라인 개정

- 새롭게 제기된 거버넌스 이슈 포섭 (예 :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동시 주주권리 보호)
- 既往 제출된 보고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재사항 명확화

24년 1월 가이드라인 개정

-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배당절차 개선,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 장기재직 사외이사 선임제한
- 소액주주·해외 투자자 소통 강화, 임원 보수 및 보험 지원정책, 메자닌 채권 발행시 주주권리 보호 관련 등

*Comply or explain: 준수 여부 (Comply) 및 미준수시 사유에 대한 설명 (Explain)

기업지배구조 의무 공시 주요 내용

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 이상 상장 대기업까지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주요내용



'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적용대상	자산총액 5천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 법인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대기업은 19년, 1조 이상 상장대기업은 22년부터 의무 시행
공시시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시내용	'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 (거래소에서 선정한 10가지 주요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및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 (Comply or Explain)
향후계획	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후속조치 이행 -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案)」 확정(~'19.3월) - 공시 실태 점검 (~공시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2. 공시된 정보가 적극적 주주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재대상	제재수단	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
1. 기한 내 보고서 미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벌점 부과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사실 거래소 공표 공시담당자/책임자 교육 실시 공시담당자/책임자 교체 요구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요구 매매거래정지 (공시규정 제 36~40조)
2. 허위공시		
3. 오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1차적 정정신고 요구, 불응 시 제재 	<p>관리종목 (상장규정 제 47조)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 48조)</p>

예상 이슈

1. 촉박한 공시 시한 (1월 가이드라인 확정~ 5월 보고서 제출)
2. 정확성 및 완결성 미비에 따르는 제재 리스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3. 방대한 작성 범위로 인한 공시 담당자 업무량 증가
4.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보고서 품질 저하

**기업지배구조 보고의
완전성 및 적시성 동시 제고 필요**

기업지배구조보고 가이드라인 -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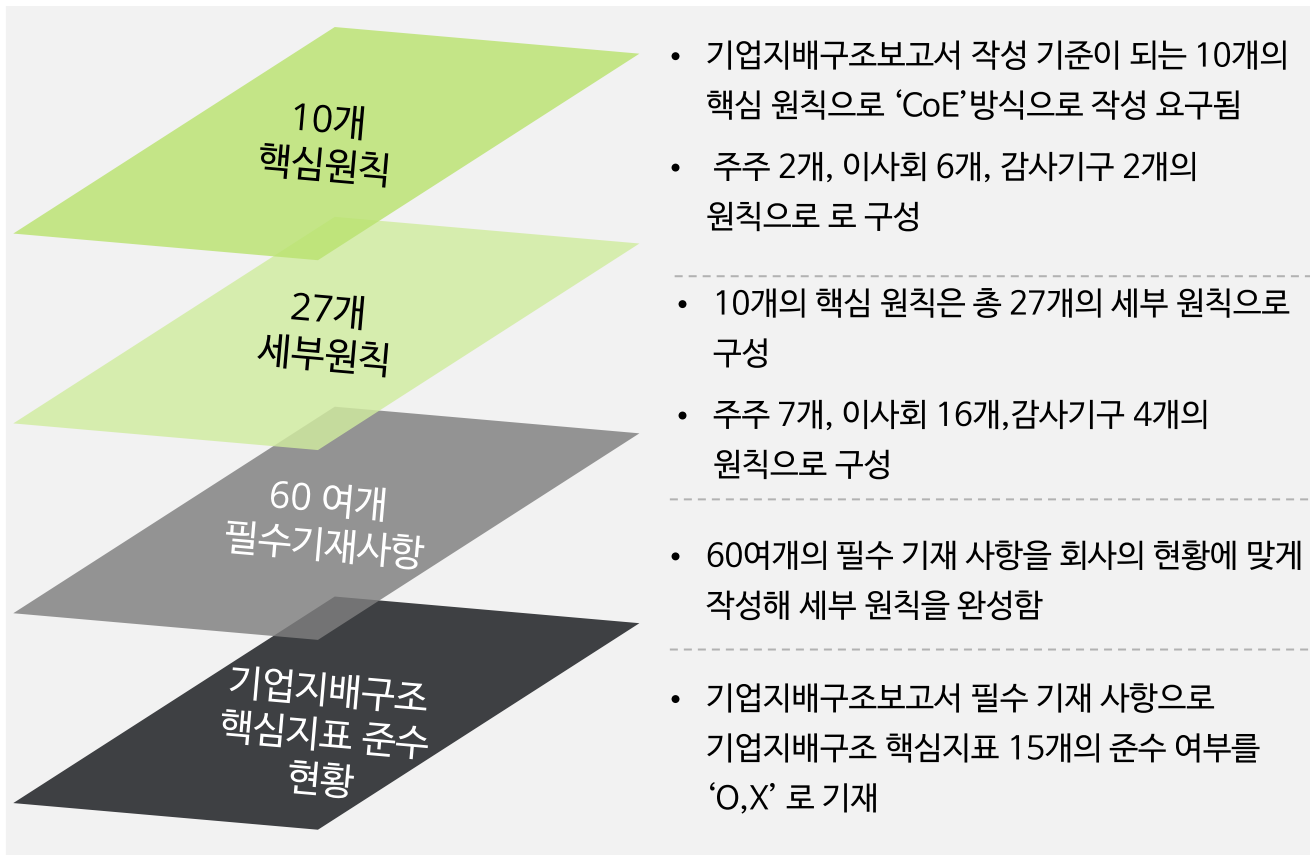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핵심원칙-세부원칙-필수기재사항 및 핵심지표 준수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특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구성

세부 내용

보고서 작성 가이드



- ✓ 제시된 10개의 핵심원칙 원칙에 대해 **Comply or Explain** (원칙준수, 미준수시 사유 설명) 방식에 따라 준수 여부와 그 근거를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 기업에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의 형태**를 원칙으로 제시
- ✓ 기업은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 재량권에 맞춰**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설명

기업지배구조보고 가이드라인 - 10대 핵심 원칙 및 CoE

가이드라인 상의 10대 핵심원칙 기반 하에 각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 / 미준수 사유 (CoE*)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0대 핵심 원칙

<h3>1. 주주의 권리</h3> <p>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p> 	<h3>2. 주주의 공평한 대우</h3> <p>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p> 	<h3>3. 이사회 기능</h3> <p>이사회는 기업과 주주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 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p> 	<h3>4. 이사회 구성</h3> <p>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p> 	<h3>5. 사외이사의 책임</h3> <p>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p> 
<h3>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h3> <p>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p> 	<h3>7. 이사회 운영</h3> <p>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p> 	<h3>8. 이사회 내 위원회</h3> <p>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h3>9. 내부감사기구</h3> <p>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p> 	<h3>10. 외부감사인</h3> <p>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 작성 Approach

// 거래소 요건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

- 핵심원칙별 CoE 적용
- Explain 부분 개선을 위한 개선노력활동 정리 (To-be 개선과제 도출)
- 회사 경영 방침과 align
- 정정 공시 등 보완사항 지속적 Follow-up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 Comply OR Explain! (CoE) - 준수 여부 / 미준수 사유 및 계획을 기재

기업지배구조보고 가이드라인 - 24년 주요 개정사항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주식가치 희석 방지 등 주주환원 정책, 주주권리보호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한국거래소 (KRX)

1.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원칙 1)

- 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 여부 공시
- 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 공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 개선

시
사
점

- ✓ 실제 배당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배당기산일'의 배당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원칙 1, 2)

- 소액 주주 소통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
- 주총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 높거나 부결안건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 공시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시
사
점

- ✓ 경영진이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을 공시하고,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는지 설명하도록 요구

3. 메자닌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원칙 2)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 조달과정에서의 주주의견 수렴정책 공시 의무화

주식가치 희석으로부터 주주권리 보호

시
사
점

-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 기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

* CB, BW, EB 등 주식 전환가능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등

4. 이사회내 다양성 (원칙 4)

- 성별 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확대
- 이사회내 동일 성별 구성여부 및 미준수시 사유 기술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 중요성 강조

시
사
점

- ✓ 성(性) 뿐 아니라 연령·경력 등으로 다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회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

5.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원칙 7)

- 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
- 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
-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남용방지 정책 공시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지원

시
사
점

- ✓ 회사의 재무적 성과 등 기업가치 향상 위한 이사의 노력을 적절히 평가·보상하고,
- ✓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 강화추세에 맞춰 이사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6.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 사익편취/부당지원/회계처리기준까지 위반 확대
- 1차 당국의 판단 (기소 및 행정처분) 기점으로 형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

기업가치 훼손 책임 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

시
사
점

-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부당지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 ✓ 공시기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조정

딜로이트 자문 서비스 소개

Deloitte 기업지배구조 보고 자문팀이 자료 취합부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투자자를 위한 영문 보고서 작성 및 번역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서비스

- 보고서 초안 작성
- CoE 전략 방안 제시
- 보고서 수정
- 개선과제 이행방안 제시



보고서 검토 서비스

- 회사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 검토
- CoE 전략 방안 제시



영문 보고서 작성 서비스

- 미국 거래소, MSCI, 등 해외 투자자 정보 제공용 영문 보고서 작성
- KRX 영문 가이드라인, OECD, NYSE Corporate Governance Guide line에 따라 작성

딜로이트 자문 서비스 - 주요 기대효과

딜로이트 자문 서비스를 통해 보고서 공시 기준을 충족하고 지배구조 개선 체계 개선 및 장기적으로 ESG 거버넌스 평가 상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의무 충족

- 2024년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상장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법적 의무 충족 및 우수공시법인 선정을 통한 혜택 가능성 확보

2 거버넌스 체계 개선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에 대한 CoE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주주·이사회·감사기구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 회사 상황을 고려해 개선 과제를 우선 순위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3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향상

- 회사 전반 거버넌스 운영 및 주주·이사회·감사기구 세 영역에 대해 도출한 개선사항 이행은 기업지배구조 평가(KCGS) 등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 회사 ESG 평가 등급 특히 G 등급 향상 효과 기대를 통해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역할 확대

"전략적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중장기적 통합 가치 창출"



(*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연1회 평가를 실시하여 부여 하는 등급)

딜로이트 자문 서비스 - 컨설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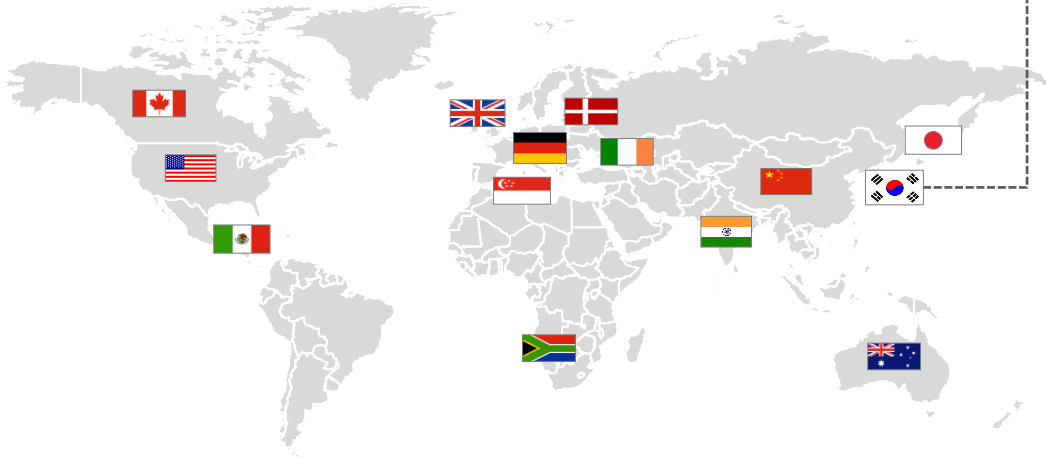
현황 분석 / Gap 진단, 원칙 별 CoE 방향 기획 및 보고서 완료 및 공시 이후 개선 위한 후속조치 등 일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취합 현황 검토	2. Planning (보고서 설계)	3. Report Review (보고서 검토)	4. Follow-up (후속조치)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자료 취합현황 파악 주주/이사회/소위원회/감사위원회 규정/활동 자료 검토 • 현업 인터뷰 • 데이터 / 활동 내역 취합 • As-Is Gap 분석 10대 원칙 대비 As-Is readiness 점검, 이슈/취약 부분 확인·도출 • 10대 원칙 별 현안/이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 활동 설계 10대 원칙 단위 현황과 활동 재분류 • ‘Comply’ or ‘Explain’ 설계 • ‘Comply’ 영역 데이터 취합, 분석 • ‘Explain’ 영역 해명 방식 설계 ‘불가피’ 부분 해명 노력 활동 보강 (필요시 현업 의견 청취) • ‘Explain’ 영역 개선 여지 고려 향후 개선 계획/노력 등 의견 제시 (현업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원칙 별 CoE 검토 • 10대 원칙 별 보고서 초안 검토 • 보고서 Quality Review CoE 기술방식 및 수준 중심 검토 • CoE 보강 방안 제시 CoE 특히 ‘Explan’ 영역에 대한 추가 보강방안 제시 • 최종 보고서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X 공시 (회사) • KRX 정정 공시/문의 시 의견 제공 • 대외 PR 지원 (홈페이지/기사 등 PR 콘텐츠 제공) • 개선 과제 도출 Gap 분석결과 기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 과제 제시 • 향후 발전 Road-map 수립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방향 등 제시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보고서 - Issue findings (10대 원칙별 As-Is 준비수준 점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E 방향성(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기사 등 PR 콘텐츠 • 기업지배구조 공시 강화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 (Roadmap 포함)

Why Deloitte - 기업 지배구조 발전 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전세계 60개국 GCCG¹⁾와 연계하여 선진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국내 기업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Deloitte Global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관련 주요
글로벌
서비스

Board member
program

-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사외이사 대응 가이드라인
- 당국 지배구조 법적 규제 설명

UK governance
code review

- UK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준수를 위한 자문 서비스
- 이사회 운영 평가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review

- 감사위원회 운영 검토
- 해외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벤치마킹
- 이사회 내 위원회 교육

Entity structure
& reporting lines
review

- 명확한 역할 및 책임 구조 구축
- 의사결정 책임자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보고체계 개선 서비스

국내 딜로이트 기업지배구조 발전센터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Material 제공 및
관련 서비스 Lead

사외 이사 / 감사위원회 지원
Working Group

협업

Sponsorship

조남진 본부장

Group Leader

리스크자문본부
김학범 상무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

- Big 4 회계법인
참여 사단 법인
(금융위 산하)

Advisory

이재호 전무

실무 담당

리스크자문본부
허구 상무

-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제공
등 감사위원회
지원 목적

실무 Group

리스크
자문

감사

재무
자문

1) GCCG: Deloitte Global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Why Deloitte - 기업 지배기구 발전 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 및 최신 동향 등을 포함한 Insight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 Insigh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Deloitte.



2023.03 | 창간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Deloitte.



2023.05 | 제2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Deloitte.



2023.08 | 제3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Deloitte.



2023.11 | 제4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카드뉴스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Contact Information



허 구 파트너

Direct : 02-6676-2903

Mobile : 010-5467-9397

Email : khuh@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